

2018년도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과목

구 분	채용 분야		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시험시간
				계	남	여		
계				88	82	6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 분야		지 방 소방사	27	27	-	<input type="checkbox"/>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input type="checkbox"/>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조 분야		지 방 소방사	16	16	-	<input type="checkbox"/>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구급 분야		지 방 소방사	33	27	6		
	운전 분야		지 방 소방사	10	10	-		
	항공 분야	운 항 관리사	지 방 소방교	1	1	-	<input type="checkbox"/> 실기시험으로 대체	
항 공 조종사		지 방 소방위	1	1	-			

※ ‘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응시 자격

1. 응시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가.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경력경쟁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

2.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구 분	응 시 요 건
공 개 경 쟁 용 채	<p>□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p> <p>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p> <p>②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p>
경 력 경 쟁 용 채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제한 확인 기준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채용구분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분야	18세 이상 ~ 40세 이하	1977. 1. 1. ~ 2000. 12. 31.
경력경쟁 채용시험	그 외 분야 ¹⁾	20세 이상 ~ 40세 이하	1977. 1. 1. ~ 1998. 12. 31.
	항공조종사	23세 이상 ~ 45세 이하	1972. 1. 1. ~ 1995. 12. 31.

¹⁾그 외 분야 - 구조, 구급, 운전, 운항관리사

※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4.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때옴(胸郭)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 동 신 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5. 면허·자격 및 경력요건

가. 공통사항(공개·경력경쟁채용)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자

(도로교통법 제80조)

※ 운전면허 적용 기준일 : 응시원서접수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예정일

다.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무효 및 합격이 취소됨

라.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구분	계급	분야	응시자격(면허) 및 경력요건
경력경쟁 채용	지방 소방사	구급	<p>○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영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p> <p>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p> <p>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p> <p>⑤ 「지역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p> <p>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p> <p>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p> <p>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p> <p>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p> </div>

채용구분	계급	분야	응시자격(면허) 및 경력요건	
경력경쟁 채용	지 방 소방사	구 조	○ 군 특수 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지 방 소방사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군경력 제외) ※ 운전 실무경력은 아래 사항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 18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경력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 18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③ 공항항만 소방대에서 소방차 운전 경력		
지 방 소방교	항 공 운 항 관리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채용계급별 환산기준표 【붙임 1】		
지 방 소방위	항 공 조종사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비행 경력이 있는 자 ③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 소지자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 경력경쟁 채용시험	원 서 접 수		3. 5.(월) ~ 3. 9.(금) <취소기간 : 3.5.(월) ~ 3.12.(월)>		
	제1차 시험	필기시험	3.22.(목)	4. 7.(토)	4.26.(목)
		실기시험		4.12.(목) ~ 4.13.(금) 【항공조종사 분야에 한함】	
	제2차 시험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4.26.(목)	5. 3.(목) ~ 5. 4.(금)	5.11.(금)
	제3차 시험	인력성검사	5.11.(금)	5.19.(토) ~ 5.20.(일)	면접위원 참고자료
		서류전형		5.23.(수) ~ 5.24.(목)	불합격자 개별통보
신체검사		5.23.(수) ~ 5.25.(금)			
제4차 시험	면접시험	6. 5.(화)	6.11.(월) ~ 6.12.(화)	6.26.(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및 광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 항공조종사 실기시험은 소방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실기시험 장소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공고)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1. 접수방법 및 접수시간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1522-0660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2. 응시수수료의 비용

채용예정 계급	응시수수료	비 고
지방소방사 · 지방소방교	5,000원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신용카드 ·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지방소방위	7,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해상도 100dpi 이상),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등록 할 수 없음)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 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기간 내 접수 취소 시에는 규정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에 통하여 확인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시험 방법

공개경쟁 채용시험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서류전형(면)적성검사 + 면접시험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 구조, 운전, 운항관리사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서류전형(면)적성검사 + 면접시험
	항공조종사	□실기시험 + 서류전형(면)적성검사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단,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항공조종사 제외]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 - 10:00~11:40(100분) / 경력경쟁 - 10:00~11:00(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음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음 【붙임 2】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구조분야는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로 결정
-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7의 계산식의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붙임 3】**

2. 제1차 시험 : 실기시험 **[항공조종사에 한함]**

- 시험일자 : 2018. 4. 12.(목) ~ 4. 13.(금) - 시험 기간중 지정 일시에 응시하여야 함
 - ※ 실기시험 장소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시 별도 공고
- 평가방법 : 운항조정 능력(시뮬레이션) 평가
- 평가내용 : 기본비행, 임무형 비행, 기본 계기비행, 항공안전 등 평가
- **합격자 결정** : 평가과목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로 결정

3.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항공조종사 제외]**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개 종목(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20미터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에 의함 **【붙임 4, 5】**
-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보호를 위한 도핑테스트 실시 : 10%이내
 - ※ 도핑테스트 안내 및 절차, 금지약물금지방법 **【붙임 6】**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이상(30점 이상)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체력시험에 합격하였어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 나온 경우 합격 취소

4.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인성~~적~~성 검사

가. 신체검사

- 검사방법 : 시험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기간내에 신체검사를 실시
(수수료 응시자 부담)
 - ※ 항공조종사의 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서’로 대체함
 - ※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결정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함 **【붙임 7】**

나. 서류전형

- 제출서류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준비서류 안내합니다.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는 합격처리

다. 인성~~적~~성 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검사장소, 방법 등은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합니다.

5.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 인성~~적~~성검사 결과서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6.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합니다.
- 항공조종사는 실기시험 성적 75%, 면접시험 성적 2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5항)
 - ※ 구급분야 남~~성~~은 각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 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다른 성~~별~~에서 추가로 선발 합니다.

6

가산 특전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면허증)가점은 각각 합산적용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은 하나만 인정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1.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 의사상자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록여부 및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담당부서)등에 직접 확인바랍니다.

3.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 자격증 및 면허증 가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최종 합격되어 발급되고, 필기 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면허증)이어야 합니다. **【붙임 8】**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비율 (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한 가산점은 각각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점이 모두 해당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면허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고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4.7.~4.11.)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타락이나 중복지원, **가산특전 대상자 가산점 등록 기간내 미 입력 및 오류입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소지하고 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전량 회수합니다.

자.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62-613-8021 / 8024](tel:062-613-8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기타 안내사항**

【붙임 1】 채용 계급별 환산기준표

【붙임 2】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붙임 3】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붙임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붙임 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붙임 6】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붙임 6-1】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붙임 6-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붙임 7】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8】 자격(면허)증 소지자의 가점비율

채용 계급별 환산기준표

구분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경 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고등 학교교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원	
지 방 소방령	5급		소령	18~23호봉	13~18호봉	11~16호봉	과장 차장
지 방 소방경	6급 (3년이상)		대위	14~17호봉	11~12호봉	9~10호봉	계장 대리 (3년이상)
지 방 소방위	6급	경위	경위중위□ 소위□중위	11~13호봉	9~10호봉	7~8호봉	계장 대리
지 방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이상)
지 방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호봉			평사원
지 방 소방사	9급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 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등 한다.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참조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악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를 실시합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 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 사용 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붙임 7】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8년 5월 2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 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에 동의하셔야 하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stanozolol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 금지방법

- 도핑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총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격(면허)증 소지자의 가점비율

비율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소방 관련 국가 기술 자격 중 기술 사 기 능 장	소방 관련 국가 기술 자격 중 기 사	소방 관련 국가 기술 자 격 중 산 업 기 사 기 능 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자동차정비, 화공, 위험물,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운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생산자동화, 농업기계, 설비보전, 농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제어, 전자,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기응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향해사□ 기관사	5급 또는 6급 향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응급구조사 2급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가점)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